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분석

Analysis of License Agreements of e-Journal Packages for Interlibrary Loan

김 환 민 (Hwan-mi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전자저널의 라이선스 계약서 분석 |
| 2. 저작권법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 5. 결론 및 제언 |
| 3. 라이선스 계약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 |

초 록

도서관에 소장된 인쇄 저널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각국에서 저작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라이선스 계약과 원격 접근에 의해 이용되는 전자저널을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호대차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출판사 및 정보공급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전자저널이 저작권법에 의해 도서관들이 상호이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전자저널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조건을 분석하여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Copyright law generally regulates interlibrary loan related with duplication and transmission of print journal articles in each country. However, it could not be assured whether library can fulfill the interlibrary loan requests for e-journal articles is restricted by license agreements with publishers or vendors. This study aims to seek the way that libraries can provide interlibrary loan requests for e-journal articles in accordance with copyright law and license agreements.

키워드: 전자저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법, 복제, 전송
e-Journal, Interlibrary Loan, License Agreement, Copyright Law, Reproduction, Transmission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mrkim@kisti.re.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143-164,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143]

1. 서론

도서관간 원문 복제에 의한 상호이용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의 복제물을 요청하고 수신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IFLA(2012)는 도서관간 상호대차는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최소한 인쇄된 전자 논문은 팩스 전송이나 복사본 우편 전송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 타 도서관으로 제공을 위해 Ariel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한 도서관간 원문 제공 소프트웨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IFLA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도서관 사서는 전자저널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공개적으로 논의된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국내외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서비스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연구는 많았다. 그러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현행 저작권법으로부터 찾고자 한다면 유형의 정보자원에 한정되어 입수나 제공 가능한 범위와 분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전자저널이 확산됨에 따라 학술저널 이용의 대부분을 전자저널이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전자저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국외 학술저널 중 80%

가 전자저널로 유통되고 있으며(OA, FA, 국내 및 중국 학술저널 제외), SCI 학술저널 중 95%가 전자저널로 발행되고 있다(WiseCat 2015). 즉시 원문을 검색·조회할 수 있고 고품질 인쇄가 가능한 전자저널에 익숙한 이용자들은 복사기나 팩스에 의한 낮은 사본 품질과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익숙하지 않게 된 것이다.

둘째, 도서관이 소장하는 인쇄저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장 중인 인쇄저널 폐기와 인쇄저널 구독 축소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에 따르면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인쇄저널 폐기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보존 공간은 부족하지만 확장할 계획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2%는 인쇄저널을 폐기했고 69%는 폐기를 고려 중이었는데 인쇄저널을 폐기하거나 폐기를 고려하는 주요 이유는 공간의 부족과 낮은 이용률 때문이었다. 한편 인쇄저널 구독이 축소되고 있는 단적인 예가 있다. 2015년 KESLI-ScienceDirect 컨소시엄 참가기관 192개 기관 중 84%인 162개 기관이 전자저널만을 구독 중이다. 다른 홀딩기관의 빅딜 출판사의 경우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쇄저널 수집을 포기할 경우 구독료가 할인되며, 인쇄저널 폐기 사유와 마찬가지로 공간과 이용률의 문제 때문으로 이해된다.

셋째, 전자정보는 언제든지 갱신 계약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은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자정보 갱신은 기본적으로 수요 및 이용률과 구독료에 따라 기관별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2014년

KESLI-Springer 컨소시엄 협상 결렬에 따라 150여 개 기관이 구독하던 2,000여 종의 전자저널에 대해 컨소시엄 계약이 중단되고 많은 기관이 개별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갱신 계약을 중단한 도서관은 구독하던 전자저널을 대신할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이 때 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대체 서비스 방법은 aggregator의 엠바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거나, 출판사 웹사이트로부터 논문을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때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및 NDSL이나 RISS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대체 서비스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도서관간의 원문복사서비스 대상 자료는 대부분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규정과 공정이용, 도서관 보상금 및 권리처리 등과 관련하여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곽동철 2013; 김규환 2015; 박영길 2005; 유수현, 김혜선 2012; 정경희, 이호진 2014; 홍재현 2005). 이러한 연구는 대상 자료가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것으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인쇄저널은 분명 그 대상 자료에 해당되지만 라이선스 계약과 원격 접근에 의해 이용되는 전자저널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황옥경 등은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대표적인 라이선스 모델들에 대한 분석에 그치거나

소수 패키지의 계약서만을 다루고 있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라이선스 계약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황옥경 2004; 황옥경, 이두영 2004).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전자저널의 적법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와 국내에 유통 중인 주요 전자저널 패키지의 라이선스 계약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이용권이 확보되는 전자저널이 인쇄저널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간 상호대차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적용하여 상호이용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의 의의 및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주요 라이선스 계약모델에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자정보 국가 컨소시엄(KESLI)의 22개 주요 전자저널 패키지의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건을 분석하였다.

2. 저작권법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2.1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논의되어왔다. 주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와 제35조의3(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나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31조 3항은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하여 홍재현(2005)은 저작권법상 상호대차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서관 면책 적용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고 Ariel 형식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관행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도서관 면책 적용의 명문화에 노력하면서 학술저작물 계약 시 서면으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길(2005)도 Ariel 형식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저작권법상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이용자 요구에 의해 일부분을 1인 1부 제공하므로 복제 요건은 충족하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31조1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 3항 적용에 대해서도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경희와 김규환(2015)은 현재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저작권법 제31조 3항은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모든 도서관이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으로 그 대상 자료가 이용자의 요청이 있기 전에 도서관간의 다수의 복제 전송을 미리 예측하여 소장 자료를 디지털 복제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것의 이용과 도서관간의 복제 및 전송에 따른 다양한 조건(디지털 형태 자료는 디지털 복제 금지, 도서관 보상금, 판매용 자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도서관간 전송 불가 등)을 부여하고 있어 서비스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31조 제1항과 제3항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경과된 자료의 일부를 도서관이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 후 아날로그 형태로 출력하게 하여 1인 1부에 한해 제공하도록 하고 도서관 보상금을 지불하면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겠으나 빈번한 복제와 출력을 염두에 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적용하는 셈으로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규정이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 제31조(도서관 등의 복제)의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여지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차치하면서

도 최신성이 중요한 학술저널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원문복사서비스 요청은 거절될 수밖에 없다. 즉, 법적으로는 Ariel 형식의 서비스는 상당부분 허용되지 않으며, 소장한 인쇄저널을 복사하여 1인 1부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도 법이 보장하지 않는 관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 한 경우 그것도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 다른 도서관에 전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저널은 이미 대부분 전자 형태로 유통되며 많은 경우 인쇄본을 다시 디지털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법의 테두리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2.2 미국 저작권법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 서비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사를 ‘공정 이용’의 범주에 넣는 것은 1976년에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의 107조에 근거한 해석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107조는 저작권의 독점적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사를 이 범주에 넣어 해석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평, 논평, 뉴스 보도, 수업이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서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를 위해 이루어지는 복사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조항에서

공정 이용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물의 성격과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의 목적, 상업성의 여부, 사용된 저작물의 양,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대한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108조는 도서관 및 아카이브에서 이루어지는 복사 행위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사 행위는 한 사람을 위해 한 부만을 복사해야 하고 그 복사물은 이용자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복사를 행하는 도서관은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복사물을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과 관련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복사 행위가 ‘저작물 구입이나 정기 구독을 대신할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분량의 복사가 저작물 구입이나 정기 구독을 대신할 목적이 아닌지를 CONTU(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 Works)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다. CONTU는 1976년 개정 미국 저작권법 10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컴퓨터와 복사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시장에서 도서관의 구독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1978년 발간된 최종 보고서에 권고하고 있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제공 받는 도서관은 1년 동안 신청 시점에서 5년 이내에 동일 저널에서 발간된 5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CONTU 1978). 이를 ‘rule of 5’라고 하는데 1년 동안 그 정도의 복사는 저작물의 구입이나 정기 구독을 대신할 목적이 아

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권고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이용에 대해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 서비스를 신청하여서는 안되며 저널을 구독하거나 출판사로부터 논문을 구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3 CCC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가이드라인

미국의 Copyright Clearance Center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과 관련한 절차와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CCC 2013).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청도서관과 제공도서관의 성격, 라이선스 계약 준수, 저작권법과 CONTU 가이드라인 준수, 저작권 고지, 기록의 보존, 저작권료 지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2.3.1 제공 도서관

- 1) 도서관의 성격이 모기관 외부의 공공 연구에 개방된 것이어야 한다.
- 2) 출판사와의 라이선스나 구독 계약에는 저작권법이나 CONTU 가이드라인 보다 저작물 이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구매가 아닌 라이선스인 경우 라이선스 계약이 저작물 이용에 지배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라이선스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 3) 신청 도서관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신청할 때 각각의 신청에 대해 저작권법과 CONTU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 4) 개인적인 조사나 연구를 위한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5) CONTU 가이드라인은 5년 미만의 자료에 적용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적절한 복제의 분량에 대한 결정은 도서관이 판단한다.
- 6) 모든 제공 자료에 본래의 저작권 고지를 포함한다.
- 7) 출판사와 구독 협상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건을 포함하여 협상한다.

2.3.2 신청도서관

- 1) 도서관의 성격이 모기관 외부의 공공 연구에 개방된 것이어야 한다.
- 2)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시 '제공 자료가 신청자의 도서관 장서가 아니며,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가 될 수 없다'고 저작권 관련 요구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3) 자료의 유형이 음악, 사진, 그림, 조각, 동영상 또는 뉴스와 관련된 것 이외의 시청각자료는 상호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림이나 사진이 저작물의 일부본이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된 것을 보존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CONTU 가이드라인은 출판된 지 5년 미만의 자료에 적용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적절한 복제의 분량에 대한 결정은 제공·신청 도서관이 판단한다.
- 5) 신청 자료의 총량이 구매나 구독을 대체할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 “Rule of Two”: 저작권법 108조에 의해 도서관은 한 신청자에게 저널의 한 이슈에서 하나의 기사를 저작권 허락 없이 제공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기사에 대해서는 저작권 허락과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Rule of Five”: CONTU 가이드라인에 의해 신청 도서관은 특정 저널의 1년간 발행분(한 이슈가 아님)이나 단행본 등에서 5개의 기사나 챕터 또는 일부분을 제공받을 수 있고 6개부터는 저작권 허락과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저널 구독이나 구매를 대체할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6) 신청 도서관이 저작권법과 CONTU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을 신청서에 표현해야 한다.
- 7) 신청 도서관은 모든 상호이용 신청 후 3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8) CONTU 가이드라인은 신청 도서관이 상호이용 신청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일부 도서관은 특정 출판물에 허용된 5개의 사본 제공이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연말에 부가적인 보고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 있다. 신청 내역의 빈번한 확인은 정기적인 저작권 허락과 저작권료 지불 상황과 예산 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 9) CONTU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저작권 허락과 저작권료 지불을 하거나 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같은 저작권 집중 관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2.4 영국 저작권법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 서비스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4년 통과되었는데 이는 행정, 장애인, 연구, 교육, 도서관과 아카이브 등 5개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동년 6월에, 사적복제·패러디 등에 관한 것이 동년 10월에 발효되었다. 영국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 시대 경제성장의 동력인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규범 체계의 정비에 있다면서 무엇보다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예외조항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예측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기업이나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 정보의 활용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영국 산업 전반에 혁신을 통한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경 2015).

개정된 영국 저작권법 제41조(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 1부 제공)에 의하면 도서관의 사서는 비영리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복제물 1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42조(사서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에 의해 도서관 장서를 보존 및 대체하거나 다른 도서관 장서의 멸실, 파기, 손상된 장서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제42조A(사서에 의한 복제: 공개된 저작물의 1부 복제)에 의해 비영리 도서관의 사서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신청시에 신고서가 필요한데 신청자 이름과 다른 도서관에서 신청한 복제물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진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누구도 유사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41조, 제42조 그리고 제42조A에는 각각 라이선스 등 계약 조건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계약한다면 이 조항들에 의해 그 계약 조건은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UK Government 2014).

영국 저작권법상의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 특권 관련 해설(Morrison and Secker _)에 의하면, 다른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를 위해 복제할 수 있는 '적정 분량'을 저널의 1개 논문, 단행본의 1개 챕터 또는 전체 저작의 10%라고 하면서 음성 저장물이나 영상물에 대해서도 개정 저작권법이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적정 분량'에 대한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DRM을 무력화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다 유추할 수 있지만 디지털 전송까지 가능한지는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Mangiaracina, Russo and Tugnoli(2015)는 영국 저작권법 개정이 진행 중인 라이선스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 라이선스보다 법이 더 많은 것을 허용한다면 도서관은 이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라이선스에 금지하고 있는 조건이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도서관은 더 이상 라이선스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법 개정이 매체의 제한 없이 전자저널에 수록된 논문이나 전자책의 챕터 등 저작물의 일부분을 영국 내의 도서관간에 상호 이용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했다.

요약하면, 개정된 영국 저작권법은 도서관간 상호 이용을 매우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속기관 도서관의 사서에게 정해진 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자료를 신청하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따라 다른 제공 도서관의 사서가 제공하는 복제물 1부를 정보 공급사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5 저작권법과 라이선스 계약

각국 저작권법을 확인한 결과 전자저널에 수록된 논문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나라마다 그 상황은 차이가 있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과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 특권에 의하여 도서관 소장 정보자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CONTU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공 가능 범위를 보완하고 있다.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 및 관행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인쇄 자료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전자정보의 라이선스 계약서에도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급사와 패키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영국 저작권법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으며, 공정이용을 준수하면서 다른 도서관의 신청에 따라 복제물 1부를 제공할 수 있는데 라이선스 등 계약 조건이 저작

권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제약한다면 그 계약 조건은 무시할 수 있다고 하여 전자저널을 포함하여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소장된 인쇄정보자원에 대해서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더욱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전자저널에 대하여는 그 여지를 찾기 어려워 법적 개선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용하는 조건 범위 안에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실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3. 라이선스 계약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3.1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판매의 원칙

현행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에 대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저작자 배포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 하는데 배포권 행사를 최초 배포 시에만 인정하여도 창작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며 이로써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저작자가 가진 배포권은 소멸된다(구병문 2008).

이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동법 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전송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 판매의 원칙을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디지털 저작물은 신속 저렴하게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며 유형 매체와 분리되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의해 최초 판매의 원칙 적용은 제한된다.

3.2 전자정보의 라이선스 계약

인쇄 정보 자원으로부터 전자자원으로의 전환은 도서관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자자원의 수집과 서비스에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쇄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배되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계약법이 대신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인쇄 자원 구매에 의해 가능하던 이용에서 이제 의례적인 것이 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Dygert and Langendorfer 2014).

이러한 계약 절차는 Davis(1997)가 우려한 대로 라이선스 계약이 점진적으로 출판사와 정보 공급사의 이익을 보호하여 출판사와 정보 공급사에 특권을 부여하는 법적 형식으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률도서관협회(AALL 2004)는 전자자원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라이선서와 라이선서 간에 관련된 사항을 지배하며 라이선서가 그들의 표준 계약서를 라이선서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였다. 또 양측은 계약서

내의 조건에 구속되므로 만족스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핵심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서명하여서는 안 되며, 최종 합의 조건은 반드시 문서화 하고 구두에 의한 것에 의존하면 안 되며 전자자원을 라이선싱 하는 데에 있어 계약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공정이용이나, 도서관간 상호 이용, 도서관에서의 이용 및 교육 목적의 이용 등 법에 허용된 특정한 권리 망실
-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제한을 강제하거나 기관에 법적 위험을 초래
- 사용자 그룹의 일원이 저지른 부적절한 이용 때문에 갑작스런 계약 종결
- 예기치 않은 취소, 갱신 고지 요구, 자동 갱신, 요금 인상
- 기술적 관리적 인프라에 의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

Florida Virtual Campus(2013)는 2009년 발행된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 환경에서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전자책 패키지나 수요 기반 수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과 플로리다 주의 여러 대학들의 라이선싱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17USC (배타적 권리 제한: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의한 복제)에 따르지만 전자자원의 도서관간 상호 이용 관련 사항은 통상 라이선스 계약서에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유지하는 것

은 필수적인 것이라 하였다.

3.3 라이선스 계약 모델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황옥경(2004)은 국외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 모델과 국내 라이선스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라이선스 계약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국외 라이선스 계약 모델은 도서관간 상호대차 관련 조항을 두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내 라이선스 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비상업적 학술목적의 경우 요청에 따라 저널 기사를 출력한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요청 도서관에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전자적인 송신은 금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KESLI의 22개 라이선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패키지별로 매우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황옥경과 이두영(2004)은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당시 대표적인 국외의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IBLICENSE 모델: 미국 저작권법 108조와 CONTU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함.
- Cox 모델: 우편, 팩스, Ariel 등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음.
- JSTOR 모델: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하되 디지털 복제는 금함.
- CNSLP 모델: 전자파일 인쇄본 1부 전달을 위해 우편, 팩스, Ariel 등 방법으로 제공 가능하며 전송시 파일을 즉시 삭제
- NESLI2 모델: CNSLP 모델과 내용 동일

본 연구에서는 위 라이선스 모델들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갱신되고 있는 라이선스 모델과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IBLICENSE 모델(2014): 미국 저작권법 107조와 108조에 따라 허용하며, 신청자는 전자 및 종이매체 또는 혼합한 수단으로 받을 수 있음.
- CRKN 모델(2016): 전자 또는 인쇄 매체의 1부를 전통적인 상호대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도서관으로 또는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
- JISC 모델(2016): 영국내의 다른 도서관에 전자파일 인쇄본 1부를 우편, 팩스, 보안 전송 등 방법으로 제공 가능하며 전송시 파일 즉시 삭제

현행 LIBLICENSE 모델은 미국 저작권법 107조 공정이용 조항이 추가되고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되고 CONTU 가이드라인에 의한 제한 조건을 삭제하였다. 캐나다에서 추진되었던 컨소시엄 라이선싱 프로젝트 CNSLP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는 현재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CRKN)에서 추진 중인데 CRKN 모델은 다른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폭을 확대하였다. NESLi2 모델은 현재 JISC 모델이라 하는데 허용 범위와 방법은 동일하나 제공 가능 대상을 영국내로 제한하여 일부 조건이 축소되었다.

KESLI 표준계약서에도 전자정보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도서관에서 인증한 이용자에게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분인 개별 전자문서의 인쇄본 1부를 우편, 팩스 또는 Ariel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의 보안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달된 전자 파일은 인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연구 및 조사 목적으로 허용하며 상업적인 목적의 이용은 불허한다.

요약하면 초기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비해 최근의 모델은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다른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비상업적인 연구 및 조사 목적으로 전자문서의 인쇄본 1부를 우편, 팩스 또는 보안 전자전송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운영 조직에서 개발한 계약 모델은 정보 공급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KESLI 컨소시엄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4. 전자저널의 라이선스 계약서 분석

4.1 개요

KISTI는 전자정보 국가 컨소시엄(KESLI)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서 매년 100여 종의 전자정보 품목에 대하여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KESLI 컨소시엄 참가 기관은 2016년 현재 626개 기관이며 그 분포는 대학 44%, 연구

소 20%, 공공기관 20%, 기업체 12%, 의료기관 5% 등으로 비영리 기관이 84%를 차지한다. 출판사, 학회, 정보제공사, 대행사 등 73개사가 정보 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KESLI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참가기관과 공급사간의 양자계약, KESLI 주관기관과 공급사간의 대표계약 그리고 참가기관과 공급사 및 KESLI 주관기관간의 3자 계약이 그것인데 AALL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공급사가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서 또는 서비스 플랫폼에 게시된 서비스 조건을 확인하거나 공급사에 문의를 통해 22개 패키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제공 정보가 전자저널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많은 기관이 라이선싱 하는 패키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공급사는 다음과 같다.

- AAAS(Science)
- American Chemical Society
-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 American Physical Society
- Annual Reviews
- Brill Academic Publishers
- Cambridge University
- Ebsco(EbscoHost)
- Elsevier Science(ScienceDirect)
- Emerald
- IEEE/IEL
- Institute of Physics
- JSTOR
- Nature
- Oxford University Press
-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Proquest
- Royal Society of Chemistry
- Sage
- Taylor & Francis
- Thieme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대체로 그 내용의 공개를 불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건은 신청 도서관과 제공 도서관이 모두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많은 경우 KESLI 라이선스 계약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서가 이미 출판사 제공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4.2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상호대차형 원문 복사서비스 조건

Lamoureux and Stemper(2011)은 학술 도서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에서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하였다고 했는데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지만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설명하는 문구(language)와 가능 범위(permission)가 일관되게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출판사들의 대다수는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허용한다.
-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거부하는 출판사는 대부분 소규모 학회이다.

- 출판사의 대다수는 Ariel이나 ILLiad 같은 자원 공유 소프트웨어에 의한 보안 전자전송을 허용한다. 전자형태의 사본보다 인쇄본을 디지털화한 형태에 대해 보안 전송을 허용하는 출판사가 일반적이므로 전자 사본을 Ariel이나 ILLiad에 의해 전송하는 것에 대한 협상은 성공적이다.
-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표현은 해석하여 따르기에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서상의 구문이 서비스를 위한 도구와 절차를 이해할 수 없게 하거나 도서관이 적절한 방법으로 쫓을 수 없게 하며 도서관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허용하는 일부 계약서에는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 Guidelines을 언급하고 있다.

KESLI 컨소시엄에 의해 제공되는 패키지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역시 다양한 형식과 상이한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대체로 어떤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지, 대상 도서관과 허용 대상 범위 및 형식, 전달 방법, 허용 분량, 허용 분량을 벗어날 경우의 조치, 동일국 제한 여부, 기타 요구되는 조치사항 등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에 분석 대상 22개 공급사 패키지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건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4.2.1 이용 목적 및 대상 도서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

체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패키지 B, 패키지 K, 패키지 O 등 목적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 도서관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특정하거나 상업적 영리 추구 도서관은 제외함으로써 목적의 표현을 대신하기도 한다. 또한 패키지 P와 패키지 Q와 같이 대상 도서관을 특정하지 않고 비상업적 학술 연구 또는 비상업적 연구, 교수, 학습으로 목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패키지 N과 같이 허용 목적과 대상 도서관이 모두 표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 허용 분량 및 적용 법률 부분에서 특정국 저작권법 또는 공정이용 또는 관례를 언급함으로써 비학술연구 목적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불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허용 범위 및 형식

대체로 개별 문서의 1부를 전자파일의 인쇄물로 도서관간에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다양한 허용 범위와 형식이 패키지별 라이선스 계약서에 표현되고 있다. 패키지 A와 패키지 O의 경우 제공받는 자가 저널 아티클이나 단행본 챕터 등 개별 아이템 1개를 받을 수 있다 하고 있으며 제공 형식으로 전자 전송이 가능한 PDF 또는 전자파일을 언급하고 있어 제공 형식을 프린트물로만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패키지 U의 경우 인쇄본과 전자파일 개별 문서가 제공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전달 방법을 우편, 팩스 또는 전송시 Ariel이나 이와 동등한 방법의 secure electronic delivery로 제한하여 전자 파일 자체의 전달을 금하고 있다. 허용 범위를 개별 문서 1부로 제한하면서

〈표 1〉 전자저널의 패키지별 도서관간 상호 이용 조건

패키지	허용 목적	대상 도서관	허용 범위	허용 형식	전달방법	허용 분량	추가 요청	동일국 제한	기타
A	비상업적 학술 연구	공공, 학교, 대학 도서관	아티클, 북, 챗터, 등 개별 아이템	-*	우편, 팩스, 전자전송	1년간 동일저널의 5개 아이템	CCC, PPV	-	-
B	-	비상업적 도서관	아티클 1부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최근 5년 발행분의 6개 미만	저작권관리 기관, PPV	동일국	저작권 고지 의무
C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아티클 1부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	-	-	인쇄 후 파일 삭제
D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	전자파일	-	-	-	-	인쇄 후 파일 삭제
E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	-	-	인쇄 후 파일 삭제
F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일부분	-	-	인쇄 후 파일 삭제
G	비상업적 이용	비상업적 도서관	-	인쇄본	우편, (팩스)	홀딩 분 한함	-	동일국	-
H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일부분	-	-	인쇄 후 파일 삭제
I	-	비상업적 도서관	-	-	인급 없음	미국 저작권법, CONTU	-	동일국	-
J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CONTU	-	동일국	인쇄 후 파일 삭제
K	-	다른 도서관	-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미국/국제저작권법, CONTU, 관례	-	-	-
L	-	비상업적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인쇄본	-	공정이용	-	-	-
M	비상업적 연구, 교수, 학습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전자파일 인쇄본	우편, 팩스, Ariel	미국 저작권법, CONTU	저작권관리 기관, PPV	동일국	인쇄 후 파일 삭제
N	-	-	-	전자 혹은 디지털	-	미국 저작권법, CONTU	-	-	-
O	-	대학, 학교, 공공 도서관	-	디지털 혹은 인쇄본	-	구매 대체 정도는 불가	-	-	-
P	비상업적 학술 연구	-	개별 문서 1부	-	우편, 팩스, Ariel	-	-	-	인쇄 후 파일 삭제
Q	비상업적 학술 연구	-	-	-	우편, 팩스, Ariel	적정량, 영국 저작권법	-	-	-
R	연구, 학습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	우편, 팩스, Ariel	미국 저작권법, CONTU	-	-	인쇄 후 파일 삭제
S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	우편, 팩스, Ariel	영국 저작권법	-	-	-
T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	우편, 팩스	미국 저작권법, CONTU	-	동일국	-
U	비상업적 학술 연구	다른 도서관	개별 문서 1부	인쇄물, 전자파일	우편, 팩스, Ariel	-	-	-	인쇄 후 파일 삭제

* -: 관련 조항 확인 불가

허용하는 형식을 전자파일 인쇄본으로 한정하는 여러 패키지(B, C, E, F, H, J, K, M)가 있으며 패키지 G와 패키지 L의 경우도 허용 형식을 인쇄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자파일의 인쇄

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패키지 G의 경우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홀딩 저널, 즉 번들 타이틀을 제외한 구매 또는 구독분만 상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제공하는 전자저널의

대부분에 대해 상호이용을 금하고 있다. 패키지 D와 패키지 N의 경우는 허용 범위에 대한 언급 없이 전자파일의 상호 이용을 허용하면서 전송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4.2.3 전달 방법

도서관간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방법으로 우편, 팩스, Ariel, 전자전송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전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전달 방법은 허용하는 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Ariel 등의 전송을 허용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인쇄물 형식의 자료가 신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패키지가 우편, 팩스, 그리고 Ariel 등의 전달 방법을 허용하지만, 우편만을 허용(패키지 G)하거나 우편과 팩스만을 허용(패키지 T)하는 경우도 있다. 패키지 D, L, N, O는 전송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패키지 L의 경우 인쇄 형태로 도서관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 구문으로만 보면 Ariel 등의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분명치 않다. 패키지 D는 전자파일 형식을 허용하면서 전달방법에 언급이 없어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다. Ariel 등의 전달 방법을 허용하는 경우 대부분 이용자에게 인쇄물을 전달 후 전자 파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넣고 있다.

4.2.4 허용 분량 및 추가 요청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분량을 표시하거나 적용 법 및 가이드라인에 의해 허용 분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허용 분량이 명시된 경우에는 대체로 허용 분량 초과시 저작권 집중관리

센터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거나 출판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paper per view)를 유도하고 있다. 패키지 A의 경우 도서관은 1년간 동일 저널이나 프로시딩에서 5개의 논문 사본 또는 단행본 1개 챕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5년 이상 경과된 자료는 CONTU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제공받을 수 있는 분량이 적다. 패키지 B와 패키지 M은 CONTU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과 CONTU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언급하는 경우(패키지 I, J, K, N, R, T)가 다수 있었으며, 구매를 대체할 수 없는 정도 또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언급하여 신청 도서관 및 제공 도서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패키지 H, L, O, Q)도 있었다. 허용 분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계약서(패키지 C, D, E, P, U)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해석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4.2.5 동일국 제한

어떤 도서관도 스스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충당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정보자원까지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국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다(IFLA 2009). 하지만 전자정보 패키지는 통상 어느 나라에서든 구매가 가능하므로 국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당위성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동일국으로 제한하는 경우(패키지 B, G, I, J, M, T)가 일부 있었다. 라이선스 계약상 동일국 제한이 없는 경우 다른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건에 따라 국외의 도서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외 도서관으로부터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4.2.6 분석결과 종합

조사 대상 패키지는 모두 학술연구 목적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었다. 허용 범위 및 제공 형식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 패키지 내 개별 아이템의 1부로 제한하며 이용자에게는 인쇄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패키지는 전자파일의 전달을 허용하거나 홀딩 저널에 국한하여 인쇄물로만 허용하는 등 다양하였다. 도서관간 전달 방법은 많은 경우 우편, 팩스, Ariel 등 보안 전송을 허용하지만 일부는 전달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도 다소 있었으며 우편과 팩스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용 분량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량을 명시하고 그 이상의 제공에 대하여는 저작권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등만을 언급하여 도서관의 판단에 맡기거나 분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의 경우 동일국 제한을 명기하였지만 많은 경우 제한이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건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패키지에 따라 조건이 다양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군소 학회 출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서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Lamoureux and Stemper(2011)의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

Long(2007)은 전자형태의 자원에 대해 인쇄 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출판사가 도서관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그럴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공정이용은 법적으로 인쇄저널과 마이크로폼 등 물리적 형태를 가진 것에 한정되며 전자정보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출판사가 어떤 조건으로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출판사별 라이선스 계약서상에 허용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출판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라이선스 계약서는 난해한 법률 용어로 쓰여진 경우가 많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 출판사에 직접 확인하거나 법률 지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부가 조항 없이 공정이용만이 언급된 계약에서는 전자저널에 대해서도 물리적 형태를 갖는 정보자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상호간에 무료 서비스여야 한다거나 비영리 기관간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한 대형 출판사 전자저널 패키지의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결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항이 없었으며 컨소시엄 조건 협상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불허한다는 답을 들었다.

라이선스 계약상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허용하더라도 전자전송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전자전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으로 Ariel이나 ILLiad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한 경우나

전자파일의 전송을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PDF 형태로의 전송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라이선스가 아닌 구매 저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CCC의 가이드라인이나 Long(2007)의 경우와 달리 Butler는 2011년 당시 ARL의 공공 정책 관리자로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라이선스 계약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에 이를 금지한다는 비공식적 합의마저 없었다면 도서관은 표준적인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가 허용되고 따라서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전달 형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스캔한 것이나 팩스 출력물 등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으며 라이선시의 인증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전자파일을 전송하면 된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라이선시는 계약에 금지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관습으로 행해지고 법에 허용된 무엇이든지 라이선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거의 모든 계약에서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간 상호 이용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된 관행이라고 하면서 라이선서가 관행을 탈피하기 원한다면 계약서에 일일이 열거해야 하는 부담은 라이선서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서관은 계약에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도서관의 단정적 약속만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금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Lamoureux and

Stemper 2011). Butler의 이 조언은 개정된 영국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 특권과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공정이용의 범주 내에서 폭 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라이선스 계약서상의 조건에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범위가 분명한 경우 계약에 따라야 하지만 언급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공정이용의 범주 안에서 관행에 따라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전자저널을 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 패키지 또는 각각의 저널 타이틀에 대하여 적용되는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라이선스 조건에 기술적이거나 법률적인 전문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고 때로는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Okamoto(2012)는 전자저널의 라이선스 조건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고 노동력이 소모되어 원문복사서비스 담당 사서는 많은 경우 전자저널 원문의 신청에 대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Blake(2013)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West Virginia University Libraries에서 ERM 솔루션을 이용하여 저널별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조건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주

요 패키지별로 또는 저널별로 허용 여부와 제공 방법 그리고 신청 도서관의 성격과 이용 목적 등을 상세하게 참조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Mangiaracina, Russo and Tugnoli(2015)는 130종의 라이선스 계약서와 15종의 국가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전자정보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허용 관련 조항을 추출하여 국가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 ALPE(E-Journals Licenses Archive)를 소개하였으며,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저널의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국가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KISTI의 NDSL과 KERIS의 RISS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들은 협력기관들로부터 수집한 인쇄저널의 도서관 소장정보에 기반하여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자저널 원문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중

양 집중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청 기관이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용하는 성격인지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구독이나 구매를 대체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KISTI는 전자정보 국가 컨소시엄 KESLI를 운영중에 있으며 참가기관으로부터 인쇄 저널 소장정보와 전자저널 라이선스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NDSL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이 KESLI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라이선스 계약서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므로 이탈리아의 ALPE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NDSL과 연계하는 일은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서 분석은 국가적으로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하며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전문가와 사서가 함께 공론화 하고 국외의 사례를 보다 폭 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2013. 저작권법의 적용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35-254.
- [2] 구병문. 2008.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판매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 『SW 지적재산권 동향』, 37: 1-6.
[online] <<http://www.copyright.or.kr/>>
- [3] 김종철. 2012. 『도서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제한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4] 박영길. 2005.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5] 박현경. 2015. 디지털기술과 영국저작권법 개정. 『과학기술과 법』, 6(1): 115-148.
- [6] 와이즈캐. 2015. 『와이즈캐 홈페이지』. 서울: 와이즈캐. [online] [cited 2015. 6. 9.]
 <<http://wisecat.ndsl.kr>>
- [7] 유수현, 김혜선. 2012.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법적 검토 및 권리처리 유형. 『정보관리연구』, 43(4): 169-189.
- [8] 이호신. 2014.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87-413.
- [9] 정경희, 김규환. 2015. 국내 정보서비스 협력체를 통한 원문복사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413-432.
-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협력기관 소장 인쇄학술지 공동 보존 및 활용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1] 홍재현. 2005.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21-45.
- [12] 황옥경. 2004.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99-228.
- [13] 황옥경, 이두영. 2004.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117-135.
- [14]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AALL). 2004. *Principles for Licensing Electronic Resources*. Chicago: IL: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online] [cited 2016. 9. 2.]
 <<http://www.aallnet.org/Archived/Advocacy/AALL-Recommended-Guidelines/licensing-electronic-resources-052013.html>>
- [15] Blake, L., Fredette, H. and Jansen, M. 2013. "Can We Lend?: Communicating Interlibrary Loan Rights." *Serials Review*, 39(3): 188-189.
- [16]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2016. *CRKN Model License*. Ontario: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online] [cited 2016. 9. 2.]
 <http://www.crkn-rcdr.ca/sites/crkn/files/2016-09/crkn_model_license_2016_final.pdf>
- [17]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2014. *Liblicense Model License Agreement with Commentary*. Chicago, IL: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online] [cited 2016. 9. 2.]
 <<http://liblicense.crl.edu/licensing-information/model-license/>>
- [18] Copyright Clearance Center. 2013. *Interlibrary Loan: Copyrigh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Danvers, MA: Copyright Clearance Center, Inc. [online] [cited 2016. 8. 15.]
 <http://www.copyright.com/wp-content/uploads/2015/03/White_Paper_ILI-Brochure.pdf>
- [19] Davis, T. L. 1997. "License Agreements in Lieu of Copyright: Are We Signing Away Our

- Rights?”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 Theory*, 21(1): 19-28.
- [20] Dygert, C. and Langendorfer, J. M. 2014. “Fundamentals of E-Resource Licensing.” *The Serials Librarian*, 66(1-4): 289-297.
- [21] Florida Virtual Campus. 2013. *Florida Virtual Campus Guidelines for E-resource License Agreements*. Tallahassee, FL: Florida Virtual Campus. [online] [cited 2016. 10. 3.] <https://fclaweb.fcla.edu/uploads/FLVC_Licensing_Guidelines_Version_III_Final.pdf>
- [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9. *International Resource Sharing and Document Delivery: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ocedure*. [online] [cited 2016. 9. 20.] <<http://www.ifla.org/files/assets/docdel/documents/international-lending-en.pdf>>
- [2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2. *Key Issues for e-Resource Collection Development: A Guide for Libraries*.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online] [cited 2016. 9. 20.] <http://www.ifla.org/files/assets/acquisition-collection-development/publications/IFLA_ELECTRONIC_RESOURCE_GUIDE_FINAL_May2nd%5B1%5D.pdf>
- [24] JISC Collections. 2016. *JISC Collections Model Journal License*. London: JISC Collections. [online] [cited 2016. 9. 2.] <<https://www.jisc-collections.ac.uk/journals/Journals-Model-Licence-/>>
- [25] Lamoureux, S. D. and Stemper, J. 2011. “Trends in Licensing.” I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Research Library Issues: A Quarterly Report from ARL, CNI, and SPARC*. 275: 19-24. [online] [cited 2016. 8. 20.] <<http://publications.arl.org/rli275/>>
- [26] Long, B. A. 2007. “Interlibrary Loan and E-Journals.”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in Medical Libraries*, 4(3): 93-98.
- [27] Mangiaracina, S., Russo, O. and Tugnoli, A. 2015. “To Each His Own: How to Provide a Library User with an Article Respecting Licence Agreement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43(4): 199-206.
- [28] Morrison, C. and Secker, J. 2016. *Exceptions for Libraries*. [online] [cited 2016. 9. 30.] <<http://copyrightuser.org/topics/libraries/>>
- [29] Okamoto, K. 2012. “Licensed to Share: How Libraries Are Handling Electronic Journal Article Requests.” *Journal of Interlibrary Loan, Document Delivery & Electronic Reserve*, 22(3/4): 137-154.
- [30] 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1978. *The CONTU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online] [cited

2016. 9. 15.] <<http://digital-law-online.info/CONTU/PDF/index.html>>
- [31] UK Government. 2014.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Research,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Regulations 2014*. London: UK Government. [online] [cited 2016. 10. 4.]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4/1372/mad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k, Dong-Chul. 2013. "A Research on Applying Copyright Law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235-254.
- [2] Koo, Byung Moon. 2008. "The Needs to Amendment of First Sales Doctrine for Digital Works." *SW IPReport*, 37: 1-6. [online] <<http://www.copyright.or.kr/>>
- [3] Kim, Jong Chul.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Copyright Limitation for Library in Korea: Focusing on the Article 31 of the Copyright Law*.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Korea.
- [4] Park, Young-Gil. 2005.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 28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Seoul: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 [5] Park, hyun kyung. 2015. "Digital Technology and Changes to Copyright Act in the U.K." *Science & Technology and Law*, 6(1): 115-148.
- [6] WiseCat. 2015. *WiseCat Homepage*. Seoul: WiseCat. [online] [cited 2015. 6. 9.] <<http://wisecat.ndsl.kr>>
- [7] Yoo, Su-Hyeon and Kim, Hye-Sun. 2012. "Legal Review and Copyright Clearing Method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of Foreign Copyrighted Work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3(4): 169-189.
- [8] Lee, Ho-Sin. 2014. "A Study on Copyright Exemption and Fair Use on Library Servic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387-413.
- [9] Jung, Kyounghee and Kim, Gyuhwan. 2015.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s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Service Networks: Focus on Copyright Issu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413-432.
- [10]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12. *The Study on Collaborative Print Journal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rogram among Partner Libraries*. Daeje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11] Hong, Jae-Hyun. 2005.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21-45.
- [12] Hwang, Ok-Gyung. 2004. "A Study on the Model License for Electronic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199-228.
- [13] Hwang, Ok-Gyung and Lee, Too-Young. 2004. "Interlibrary Use for e-Journal: Current Issues and Sugges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1): 117-135.